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규정	제 정 일	2021. 12. 1.
		개 정 일	2026. 7. 1.
		개정차수	3차
		담당부서	국제협력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유학생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 본교와 외국대학교간의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 협정에 의하여 교환되어 수학하는 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연수생 : 한국어교육센터의 입학허가를 얻어 어학연수 또는 단기연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

제 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

1. 유학생 및 교환학생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6. 3. 1.)
2. 연수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유학생 입학자격 및 주관부서

제 4조 (입학자격) ①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소유자 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
 2.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 또는 영어 공인 시험 TOEFL iBT 59점(3.5),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점 이상이거나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 (개정 2026. 7. 1.)
 3. 당해 모집요강에 기재된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②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와 교류대학간 협약에 따른다.
- ③ 어학 및 단기 연수과정에 지원하는 연수생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입학주관부서) 유학생, 교환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유학생 선발 부서 : 입학홍보처 입학홍보과 및 국제협력센터
2. 교환학생 선발 부서 : 국제협력센터
3. 연수생 선발 부서 : 한국어교육센터 (개정 2025. 11. 1.)

제 6조 (관리주관 및 지원부서) ① 유학생, 교환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1. 유학생 관리주관부서 : 국제협력센터
2. 교환학생 관리주관부서 : 국제협력센터
3. 연수생 관리주관부서 : 한국어교육센터 (개정 2025. 11. 1.)

② 유학생, 교환학생 및 연수생의 관리 주관부서의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학생의 본교 입학,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
2. 외국인 학생 모집 및 홍보 지원
3. 전 항의 관리 주관부서는 외국인 학생 및 유학생의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진다.

제 6조의 2 (홍보 및 학생 유치 지원 협력) 유학생 및 연수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입학 지원 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유학원 등)과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해당 계약에 따라 협력 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문성, 투입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협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

제 3 장 유학생 관리

제 7조 (학사 및 졸업가능 어학기준) ① 유학생의 수업, 성적, 학적 등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3. 1., 2026. 7. 1.)

② 입학 당시 한국어 어학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능력 시험 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7. 1.)

③ 전 항의 처리를 위해 한국어 어학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학기 수업 종료일 전까지 TOPIK 3급 이상 취득증명서를 유학생 관리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유학생 TOPIK 취득 내역을 교무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제 8조 (등록금 및 장학금) ① 입학이 허가된 유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학생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라 외국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어능력 시험(TOPIK) 급수 또는 영어능력시험(IELTS, TOEFL iBT, NEW TEPS, CEFR) 급수 및 직전학기 성적 등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 9조 (입국지도) 국제협력센터는 표준입학허가서와 입국관련 자료 등을 입학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학생에게 발송한다.

제10조 (학생상담) 유학생들의 적응 및 학업지도에 관하여서는 소속 학과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지원하며, 본교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유학생활동 지원) 국제협력센터는 유학생 활동 및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4 장 유학생 출입국 및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제12조 (정담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학생 관리주관부서 소속 직원

으로 한다.

제13조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 ① 유학생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국제협력센터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3. 1.)

② 전 항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제12조의 정담당자에게 출입국 업무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4조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센터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현황 통보) 제12조의 정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3. 1.)

제16조 (변동신고) 제12조의 정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휴학을 한 경우
2. 재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4.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생활 및 안전관리

제17조 (상해보험) 유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제18조 (기타보험) 유학생은 기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또는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

제19조 (의료지원) 유학생은 간단한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학생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위기관리) 외국인 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학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강제 출국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부서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6 장 기 타

제2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